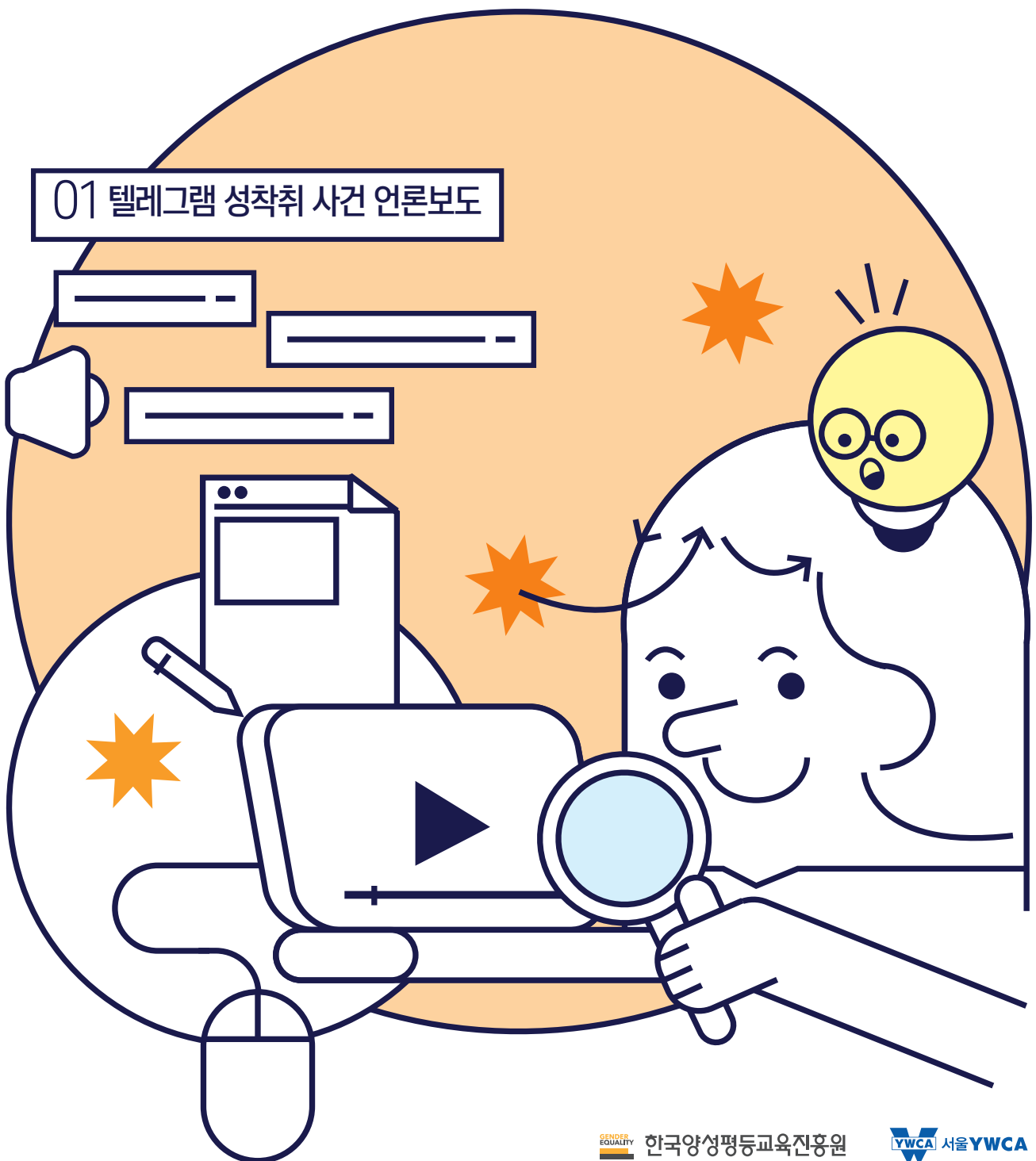


2020 대중매체 양성평등 모니터링 보고서

01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언론보도





대중매체
양성평등 모니터링
보고서

CONTENTS

06	들어가며
07	결과분석
08 16	성차별 보도사례 좋은 보도사례
18	나가며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언론보도

20. 01. 01 - 04. 26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보도기사를 성평등 관점으로 모니터링 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의 책임을 약화하지 않으면서도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다루는 보도의 필요성 제고를 목적으로 진행하였다.

모니터링 대상

982

스트레이트 / 해설기사 936 / 사실 46

네이버 포털에서 제공하는 모든 언론사의 총 982개 기사

네이버 포털 뉴스에 등록된 25,259개의 기사 중 네이버 포털 뉴스 검색 기능을 이용하여 'N번방' 검색어 랜덤 샘플링(20번째 기사)

나쁜보도 150 / 15.3%

좋은보도 9 / 0.9%

모니터링 지표

모니터링 지표는 크게 피해자 보호, 객관성, 선정성으로 나누었다. 성범죄 언론보도에서 피해자 보호는 최우선의 고려사항이 되어야 한다. 언론보도를 통해 피해자의 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 사례를 성차별적인 사례로 체크하였다. 객관성의 경우 '가해자의 입장을 대변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는가? 디지털 성범죄를 사소하게 느끼도록 만드는 표현이 있는가? 가해자를 비정상적인 존재로 타자화 하여, 예외적 사건으로 인식하게 하는가? 피해자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는 표현을 사용했는가?' 라는 4가지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객관성 지표들의 경우 2018년 미투 운동 언론보도 때와 달리, 피의자의 신상공개에 초점이 맞춰진 텔레그램 성착취 언론보도의 흐름이 이야기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 짚어 보고자 했다. 선정성의 경우 성범죄 사건을 자극적인 이야기로 전시 및 소비하는 사례들이 해당되었다.

구분	모니터링 지표
피해자 보호	1. 피해자의 신상을 과도하게 노출했는가?
객관성	2. 가해자의 입장을 대변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는가?
	3. 디지털 성범죄를 사소하게 느끼도록 만드는 표현이 있는가?
	4. 가해자를 비정상적인 존재로 타자화하여, 예외적 사건으로 인식하게 하는가?
	5. 피해자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는 표현을 사용했는가?
선정성	6. 제목에 선정적·자극적인 내용을 부각시켰는가?
	7. 디지털 성범죄를 선정적·자극적으로 표현했는가?(영상, 이미지)

- 2위 / 14건 가해자를 비정상적인 존재로 타자화
- 3위 / 8건 가해자를 비정상적인 존재로 타자화
- 4위 / 5건 제목의 선정성
- 5위 / 5건 자극적 영상과 이미지 사용
- 6위 / 3건 가해자의 입장 대변 초점
- 7위 / 1건 피해자의 신상을 과도하게 노출

1위 디지털 성범죄를 사소하게 만드는 표현 114건



01 들어가며

1 텔레그램 'n번방' 신상공개 청원 역대 최다, bbc 코리아; <https://www.bbc.com/korean/news-52000986>

2020년 상반기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이 공론화되며 국민들은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에 대해 인식하게 되었다. 피해자 상당수가 미성년자임에도 이를 제대로 처벌할 법적 제도가 미약하다는 사실이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을 통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에 분노한 국민들은 사건 용의자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촉구하는 청원을 올렸고, 이는 청와대 국민청원 사상 역대 최다 동의를 기록했다.¹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를 다루는 언론보도 또한 급증했다. 문제는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피의자 신상공개가 이루어지면서 피의자들의 주장을 여과 없이 싣거나, 자극적인 제목과 내용을 통해 이 사건을 선정적으로 소비해 이목을 끌려는 시도들이 발생했다는 점이다. 디지털 성범죄를 보도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 어떤 단어와 표현들이 디지털 성범죄의 구조적인 문제를 잘 드러내고, 반면 범죄의 심각성을 희석할 수 있는가? 디지털 성범죄를 다루는 언론보도 윤리에 대한 논의가 그 어느 때 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서울YWCA 성평등 미디어 모니터링에서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대중매체 양성평등 내용분석 사업’의 일환으로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과 관련한 언론보도의 성차별성을 분석하기 위해 2020년 1월 1일부터 4월 26일까지 보도된 기사의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모니터링은 네이버 포털 뉴스 검색 기능을 통해 노출된 기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대중매체 성차별 모니터링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모니터링 지표를 구성하고, 샘플링 방식 등 모니터링 방법을 결정하였다. 자세한 모니터링 결과는 다음과 같다.

02 결과분석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이후 ‘텔레그램 사건’)'을 보도한 총 982건의 기사 중 성평등적 보도사례는 9건(0.9%), 성차별적인 보도사례는 150건(15.3%) 발견되었다(중복 코딩 허용). 성차별적인 보도가 성평등적인 보도에 비해 월등히 많았다는 사실이 모니터링을 통해서 드러났다.

성평등/성차별 보도 수 단위 / 건

구분		내용	건수	합계
성평등 사례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알리며, 구조적인 문제 해결 방안을 적극적으로 드러낸 사례	9	9
성차별 사례	피해자 보호	1. 피해자의 신상을 과도하게 노출했는가?	1	150
	객관성	2. 가해자의 입장을 대변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는가?	3	
		3. 가해자를 비정상적인 존재로 타자화 하여, 예외적 사건으로 인식하게 하는가?	14	
		4. 디지털 성범죄를 사소하게 느끼도록 만드는 표현이 있는가?	114	
		5. 피해자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는 표현을 사용했는가?	8	
	선정성	6. 제목에 선정적·자극적인 내용을 부각시켰는가? 7. 디지털 성범죄를 선정적·자극적으로 표현했는가? (영상, 이미지)	5 5	

1 피해자의 신상을 과도하게 노출

피해자의 신상을 과도하게 노출한 기사는 1건이었다. 피해자의 나이, 거주지, 가족 관계 등의 신상보도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기사였다. 성범죄 보도를 통해 국민들에게 사건의 진상을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가 우선되어야 한다. 성폭력·성희롱 사건보도 실천요강에도 피해자의 나이, 거주지, 직업 등을 직접 공개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법적 의무로 명시되어 있다.² 언론은 피해자 신상에 관한 몇 가지 간접적인 정보의 조합으로도 피해자의 신원이 노출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하고, 경쟁적인 취재·보도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의 책임을 다해야 할 의무를 잊지 말아야 한다.

MBN / 03.24 ‘n번방 강력대응’ 대통령 지시 다음날에도 초등생에 ‘몸캠’ 사기

기사는 “오늘(24일) 오전 1시쯤 광주에 사는 초등학생 6학년 A양의 휴대전화로 페이스북 메시지 알림이 울렸습니다”, “당황한 A양은 고등학생 2학년인 언니를 깨워 불렀습니다”와 같이 서술하여 피해자에 대한 신상을 과도하게 노출하였다. 이는 피해자가 주변인들에게 특정될 수 있는 위험을 야기하였기에 문제적이다.

2 주요보도내용 - 가해자 서사에 주목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을 다룬 기사들의 보도 주요 내용은 어떠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각 기사에서 중심적으로 다루고 있는 내용을 확인하였다. ‘단순 언급’이 860건(87.6%)으로 가장 많았다. 이번 모니터링은 랜덤샘플링 방식을 활용했고, 다수의 언론사들이 단순 스트레이트 보도과정에서 복제 기사를 보도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긍정적인 점은 ‘구조적 원인 및 대책에 주목한 기사’가 95건(9.7%) 발견되었다는 점이다.

주요보도내용

구분		빈도(건)	비율(%)
1	가해자의 서사	17	1.7
2	피해자의 입장	10	1.0
3	구조적 원인 및 대책	95	9.7
4	단순 언급 (ex. 연예인의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언급 보도, 단순 스트레이트 보도 기사들)	860	87.6
합 계		982	100

4월 16일 머니투데이에서는 <‘개발자 꿈꾸던 모범생, 부파 강훈의 이중생활’>이라는 기사를 통해 가해자가 프로그래머 지망생이었으며 공부를 잘했다는 내용을 담았다. 기사의 댓글과 SNS 등에서는 이 기사가 사건과 무관한 가해자의 성적을 언급하며 모범생이라고 표현하고, 서사를 부여해 가해자에 이입하게 만드는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나왔고³ 이에 담당 기자는 해당 기사의 제목과 내용을 수정했다. 이번 모니터링에서도 가해자의 주장 또는 생애를 강조해 가해자에게 서사를 부여하는 사례가 17건 발견되었

3 “N번방 가해자에 이입하냐” 비판에 사과 입장 낸 기자, 미디어오늘,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6618>

다. 가해자의 서사를 상세히 보도하는 것은 성폭력 사건의 논지를 흐릴 수 있고, 유명인이 되고자 하는 가해자의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2-1 가해자의 입장을 대변하는데 초점

아래 사례들은 가해자의 가정환경, 성장 배경 등을 상세히 소개하며 가해자에게 동정심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기사들이다. 이 같은 기사들은 가해자의 폭력을 정당화할 위험을 지닌다.

sbn뉴스 / 03.24 조주빈, n번방 신상공개 청와대 국민청원, 2,514,457명 참여

기사는 “보도에 따르면 피의자 ***는 인천시 소재 모 전문대학에서 정보통신을 전공했고, 학교 신문사 편집국장으로도 활동했다. 학교에서는 4학기 중 3학기 평균 학점이 4.0을 넘을 정도로 성적이 좋아 장학금도 여러 차례 탈 정도로 우수했지만, 교우관계가 원만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고 적으며 성범죄 사실과 관련 없는 가해자의 신상정보를 서술했다. 특히 ‘학점이 좋아 장학금을 탔지만 교우관계가 원만하지 못했다’는 부분을 토대로 가해자가 왜 이런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는지 추측하게 만들어 가해자의 폭력을 가해자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게 하고 동정심을 느끼게 하기 때문에 문제적이다.

국민일보 / 03.31 “노예작업 팀원 최고대우” 중학생 성착취 로리대장태범 수법

기사는 배군이 로리대장태범이란 닉네임을 쓴 이유로, “나약한 이미지를 벗어던지고 세 보이고 싶었다”는 타 언론사의 보도를 그대로 인용해 가해자의 말을 부각하며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배군은 왜소하고 앳된 모습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고 서술한다. 가해자의 서사를 상세히 보도해 성폭력 사건의 근본적 원인과 관계없는 내용으로 사건 보도의 논지를 흐리고 있으며, 가해자의 폭력을 가해자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게 하고 동정심을 느끼게 하기 때문에 문제적이다.

인사이트 코리아 / 03.31 그것이 알고싶다 조주빈, 키 크는 수술받고 평소 말투도 부장님같은 느낌!

‘그것이 알고싶다’라는 프로그램에서 조주빈의 친구와 한 인터뷰를 기사화했다. 조주빈이 “어릴 적 가난해 돈에 대한 욕망이 컸다. 엄마에 대한 혐오가 있다. 부모가 초등학교 입학 전 이혼했다. 키 크는 수술을 했다” 등 가해자의 서사를 나열했다. 가해자의 서사를 상세히 보도하는 것은 성폭력 사건의 논지를 흐리며, 가해자가 왜 이런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는지 추측하게 만들어 가해자의 폭력을 가해자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게 하고 동정심을 느끼게 하기 때문에 문제적이다. 1차적으로는 이런 내용을 조사하고 보도한 ‘그것이 알고싶다’의 문제지만, 이를 문제의식 없이 기사화한 해당 언론사에게도 2차적 책임이 있다.

2-2 가해자를 비정상적인 존재로 타자화하여, 예외적 사건으로 인식하게 함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의 경우 2018년의 미투 운동과 다르게 가해자들에 대한 국민들의 공통의 분노가 존재했고, 따라서 미투 운동에 비해 가해자의 일방적 주장만을 받아쓰는 사례는 적었다.⁴ 하지만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보도에서는 가해자의 생애, 발언 등에 주목해 가해자를 비정상적인 존재로 타자화하여 성범죄 사건을 일상에서 분리된 예외적 사건으로 인식하게 하는 사례들이 14건 발견되었다. 특히

4 2018년 서울YWCA「미투운동 언론보도 모니터링」에서는 가해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기사 사례가 전체 1,500건중 324건(21.6%)의 비율로 나타났다.

5 성폭력·성희롱 사건 보도 공감기준 및 실천요강(2018, 한국기자협회·여성가족부)		‘악마’, ‘소시오패스’, ‘부적응자’, ‘짐승’ 등의 표현을 사용해 가해자를 비일상적인 존재로 표현하였다. 이처럼 디지털 성범죄를 일부 개인의 문제로 돌릴 때, 성착취물을 제작한 사람은 악마지만 소비한 사람은 정상이라는 식의 담론이 형성되기 때문에 문제적이다. 특정 피의자만 강조하는 언론의 보도는 성착취물 소비 유통 구조의 문제를 가리게 되는 것이다. 또한 성범죄 사건 보도 시 가해자를 비일상적인 존재로 표현하는 것은, 대부분의 성폭력 사건이 피해자와 가해자가 서로 아는 관계에서, 가해자의 사회경제적 지위 혹은 권력을 이용하여 발생한다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일상적으로 빈번하게 일어나는 평범한 가해자들에 의한 성폭력 사건을 ‘성폭력’으로 인식하지 못하게 한다 ⁵ 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세계일보 / 03.22	악마의 두 얼굴… ‘학보사 기자’ vs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
		기사본문에 “피해자를 겁박해 가족 앞에서 유사성행위를 하고, 이게 악마가 아니면 뭐가 악마인가?”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 글의 일부내용을 인용하였다. 기사본문 외에도 ‘악마’라는 표현을 제목으로 선정해 가해자를 ‘악마’로 칭했다. 이는 가해자를 비정상적인 존재로 타자화해 디지털 성범죄를 예외적 사건으로 인식하게 만든다.
	테크M / 03.23	‘박사방 n번방’의 악마들… 성범죄자 소굴 된 텔레그램? “메신저는 억울해”
		기사 제목과 내용에서 웹하드, 텀블러에 이어 텔레그램으로 성착취 영상을 유통한 개인들을 통틀어 ‘악마’라고 칭했다. 이는 가해자를 비정상적인 존재로 타자화해 디지털 성범죄를 예외적 사건으로 인식하게 한다.
topclass / 03.24		N번방 사건 범죄자에게 국민 심판 철회를 “짐승에게 인권은 사치”
		가해자를 ‘짐승’이라는 특수한 타자로 설정하여 디지털 성범죄를 일부 개인의 문제로 돌리는 이 같은 보도는 성착취물을 제작한 사람은 악마지만 소비한 사람은 정상이라는 식의 담론을 형성하기에 문제적이다. 특정 피의자만 강조하는 언론의 보도는 소비 유통 구조의 문제를 가리게 된다.
	중앙일보 / 03.24	[단독] 조주빈, 1년 뒤 다시 봉사활동 나와 "도청장치 만들자"
		가해자를 ‘심리적 부적응자’라고 서술하며 우리 사회 바깥의 특수한 타자로 설정하였다. 디지털 성범죄를 일부 개인의 문제로 돌리는 이 같은 보도는 성착취물을 제작한 사람은 악마지만 소비한 사람은 정상이라는 식의 담론을 형성하기에 문제적이다. 특정 피의자만 강조하는 언론의 보도는 소비 유통 구조의 문제를 가리게 된다.
	SBS뉴스 / 03.24	소름 끼치도록 주도면밀한 ‘박사방’ 운영자 25세 조주빈
한국일보 / 03.24		기사는 성범죄 가해자가 대학 시절 쓴 칼럼의 내용을 인용하여 가해자가 ‘소름 끼치도록 주도면밀한’ 성격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해결책과 관련 없는 내용일 뿐만 아니라 특정 가해자를 비일상적인 존재로 묘사해 성폭력을 일상에서 분리된 문제로 바라보게 만든다.
		두 얼굴의 조주빈… 성착취 범죄 저지르며 봉사활동 251시간
		가해자의 고등학교와 대학 시절 신상정보와 주변인들의 인터뷰를 기술하여 가해자에게 ‘철두철미’, ‘주도면밀’, ‘이중적인 모습’ 등의 캐릭터를 부여하였다. 이는 가해자를 비일상적인 존재로 느끼게 할 위험이 있으며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의 구조적 심각성을 지우고 특이한 개인의 일탈로 인식시킨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디지털 성범죄를 일부 개인의 문제로 돌리는 이 같은 보도는 성착취물을 제작한 사람은 악마지만 소비한 사람은 정상이라는 식의 담론을 형성하기에 문제적이다. 특정 피의자만 강조하는 언론의 보도는 성착취물 소비 유통 구조의 문제를 가리게 된다.

세계일보 / 03.24	웃으며 보육원 봉사…‘박사’ 조주빈의 섬뜩한 이중생활
기사는 가해자의 대학, 봉사활동 이력, 주변인들의 인터뷰 등을 통해 가해자의 신상정보를 열거하고 ‘섬뜩한 이중생활’이라는 기사 제목을 달았다. 이는 가해자를 비일상적인 존재로 느끼게 할 위험이 있으며, 디지털 성범죄를 일부 개인의 문제로 돌리는 이 같은 보도는 성착취물을 제작한 사람은 악마지만 소비한 사람은 정상이라는 식의 담론을 형성하기에 문제적이다. 특정 피의자만 강조하는 언론의 보도는 성착취물소비 유통 구조의 문제를 가리게 된다.	
중앙일보 / 03.25	낮밤 이중성 즐긴 ‘n번방’ 조주빈…전문가가 본 키워드 ‘박사’
기사는 가해자를 ‘소시오패스’라고 서술하며 감정 공감 능력이 결여된 사회 부적응자로 묘사하였다. 성폭력·성희롱 사건의 원인이나 범행 동기에 대해 잘못된 통념을 심어주는 보도이다.	
이데일리 / 03.25	[포토] ‘n번방’ 조주빈, 무표정한 악마의 얼굴
가해자를 ‘악마’라고 서술하며 비인간적 존재로 묘사하였다. 이는 가해자를 비정상적인 타자로 설정하여 디지털 성범죄를 일부 개인의 문제로 돌리는 이 같은 보도는 성착취물을 제작한 사람은 악마지만 소비한 사람은 정상이라는 식의 담론을 형성하기에 문제적이다. 특정 피의자만 강조하는 언론의 보도는 성착취물 소비 유통 구조의 문제를 가리게 된다.	
chosu.com / 03.25	[단독] 그놈이 여친이라 부른 여성도… 성착취 노예였다
기사는 가해자의 과거와 관련하여 중·고교생 시절부터 왜곡된 성 의식을 가졌음을 보여주는 정황이 온라인에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조씨가 쓴 댓글 중에는 성에 관한 내용이 많았고, 그중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아도 걸릴(적발될) 확률이 낮다”, “걸그룹 섹시 코드가 사람들 욕구 해소에 도움이 된다” 등이 있었음을 거론했다. 한 중학생이 “누나랑 같이 삼촌이랑 놀고 있었는데 삼촌이 누나 치마에 손을 집어넣었다”고 적어 올리자, “성폭행은 친인척 사이에 빈번히 일어난다”고 답하기도 했다는 가해자의 일방적인 주장을 그대로 옮겨 적으며 가해자의 서사에 집중해 보도했다. 이는 사건의 본질을 흐리며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을 “왜곡된 성의식”을 가진 특정 개인의 일탈로 바라보게 할 수 있다.	
쿠키뉴스 / 03.27	조주빈, ‘더러운 손 씻어내듯’ 봉사… “전형적 소시오패스”
기사는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여 가해자를 ‘전형적인 소시오패스’라고 서술하였다. 이는 성범죄 가해자를 소시오패스라는 특수한 타자로 설정하여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과 같은 성범죄의 구조적 특성을 지울 수 있다. 또한 ‘더러운 손’이라는 표현은 가해행위를 모호하게 표현하여 가해자의 책임이 가볍게 인식되게 하거나 가해행위의 심각성을 희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광주드리 / 03.30	[기고]“n번방 사건, 왜곡된 성·속물 근성 문제”
기사는 소제목에서 가해자의 외관을 ‘너무도 평범한 인상의 악마’라고 서술하며 ‘악마 짓을 자행한 이런 부류’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가해자를 비일상적인 존재로 묘사하며 성범죄를 일상에서 동떨어진 사건으로 인식하게 한다.	
시선뉴스 / 04.01	암호화 메신저 텔레그램 악용한 ‘박사방’…돈과 성에 눈 먼 악마의 소굴 [지식용어]
제목부터 악마의 소굴이라고 칭하며 사건을 “돈에 눈이 먼 일당과 그릇된 성에 눈이 먼 참여자들의 악행”으로 표현했다. 디지털 성범죄를 일부 개인의 문제로 돌리는 이 같은 보도는 성착취물을 제작한 사람은 악마지만 소비한 사람은 정상이라는 식의 담론을 형성하기에 문제적이다. 특정 피의자만 강조하는 언론의 보도는 성착취물 소비 유통 구조의 문제를 가리게 된다.	

건설경제 / 04.09	[시론] 풀잎이 바람에게 전하는 말
“존엄한 타인의 인격을 숙주로 삼아 기생하는 n번 방의 족속들도 스스로 인간이길 포기하고 악성 바이러스의 길을 택한 자들이다”이라는 표현을 통해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을 비정상적인 특정인에 의해 예외적으로 발생하는 사건으로 인식하게 하며 디지털 성범죄를 일부 개인의 문제로 돌리는 이 같은 보도는 성착취물을 제작한 사람은 악마지만 소비한 사람은 정상이라는 식의 담론을 형성하기에 문제적이다. 특정 피의자만 강조하는 언론의 보도는 성착취물 소비 유통 구조의 문제를 가리게 된다.	

3 디지털 성범죄를 사소하게 느끼도록 만드는 표현 사용

디지털 성범죄를 ‘야동’, ‘음란물’ 정도로 바라보는 보도 사례가 114건 발견되었다(법률 인용 및 법제도에 포함된 ‘음란물’ 용어는 모니터링 시 제외). 이 사례들은 ‘불법촬영물’을 ‘몰카’로, ‘성착취물’을 ‘음란물’로 표현하며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과 디지털 성범죄를 사소하게 느끼도록 만들고 있었다. 특히나 97회나 언급된 ‘음란물’이라는 용어는 현재 한국 사회에서 남성의 성욕은 반드시 해소되어야 하는 매우 기본적인 욕구라는 전제하에 남성의 성욕을 정당화·자연화 하는 담론 속에서 사용되고 있기에 문제적이다. 남성의 성욕은 참을 수 없는 욕망이기에 이 해소를 위한 표현물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음란물의 필요성이 주장되기도 하는 상황에서 남성 중심적 사고를 통해 음란물의 의미를 해석하는 것은, 소위 ‘음란물’로 표현되는 영상들이 실상은 ‘성착취물’이라는 본질을 흐리고,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어렵게 한다는 문제점을 지닌다. 김소라(2017)는 음란물이라는 표현 대신 성 표현물이라는 단어의 사용을 주장한다. 그 이유로 “음란성은 텍스트 내부에서가 아니라 그것을 분류, 유통, 향유, 관리하는 가운데 발견되는 것인데, 특정 성표현물을 음란물 혹은 포르노라고 부름으로써 ‘음란성’의 책임을 재현의 대상에게로 전가하는 효과를 낳기 때문이다. 특히 동의 없이 촬영, 유포된 성표현물을 음란물이나 포르노로 지칭하게 될 경우, 그것을 유포하고 즐긴 이들이 아니라 재현과 착취의 대상인 여성의 행위와 삶을 음란한 것으로 명명하게 된다(29쪽)”고 주장한다.⁶ 디지털 성범죄는 디지털 기기나 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상에서 발생하는 젠더 기반 폭력이다.⁷ 성착취물 유포를 통해 피해자들이 겪는 고통을 고려하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국가 제도 전반의 인식 전환이 절실하며 이를 위해서는 우리 사회가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올바르게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일부 언론들은 여전히 ‘몰카’, ‘음란물’ 등의 용어를 사용하며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축소하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를 사소화 하는 문제적 표현

사용된 문제적 표현	음란물	몰카	리벤지 포르노	성인물	몸샷짓	합계
기사 수(건)	97	11	3	2	1	114

4 피해자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는 표현 사용

피해자를 무조건 수동적인 존재로 그리며, 성범죄 피해가 치유되거나 극복되기 힘들 것이라는 잘못된 성폭력 통념을 재생산하는 사례가 8건 발견되었다. 모니터링 시 발견된 사례들은 “고통 속에 사는 피해자들”,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고통”, “씻을 수 없는 대못질”, “삶을 송두리째 앗아가는”과 같은 표현을 사용해 성범죄 피해를 회복이 불가능한 수치스러운 일로 묘사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는 “성폭력·성희롱 사건에 ‘피해자 측(피해자 개인, 가정환경)에 책임이 있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보도를 하지 않아야 하며”, “피해자의 피해상태를 자세하게 보도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편견이 반영된 보도를 하지 않아야 한다”⁹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농업경제신문 / 03.24 여성들 가슴에 대못질, 인간이 할짓인가... 조주빈 끔찍한 몸샷짓 유료 가입자도 공개 빨리하라 비난 빚발

‘박사방’ 운영자 조모씨라는 인물의 신상이 경찰의 심의위원회가 열리기도 전에 언론 보도를 통해 공개됐다는 소식에 “여성들 가슴에 평생 씻을 수 없는 대못질”이라는 누리꾼의 반응을 기사 끝에 인용했다. 성범죄를 회복 불가능한 창피한 일로만 바라보는 잘못된 성폭력 담론을 강조했기에 문제적이다.

매일일보 / 03.27 용인동부경찰서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 헌판식 개최

용인동부경찰서의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단 설치를 알리는 보도에서, 디지털 성범죄를 “아동·청소년과 여성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잔인하고 충격적인 범죄”라고 표현하였다. 이 같은 표현은 성범죄 피해를 회복이 불가능한 일로 그려내며 잘못된 성폭력 통념을 재생산한다.

5 제목에 선정적·자극적인 내용을 부각

보도의 선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우선 기사의 제목을 살펴본 결과, 선정적·자극적인 내용을 제목으로 한 기사는 5건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문제의식 없이 많은 클릭을 유도하기 위해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을 자극적인 소재로 소비한 사례들이다. 범죄의 구체적인 양상을 제시하는 보도는 모방범죄에 대한 우려로 구체적인 서술을 지양하는 저널리즘의 기본 윤리를 어긴 것이기도 하다. 더 나아가 아래 사례에서 발견되는 ‘아이돌’, ‘여친’, ‘6개월 아기’와 같은 표현은 단순히 선정적일 뿐 아니라 피해자의 특성에 초점을 두게 하는 것이고, 노예라는 언급 역시 피해자의 상태나 피해 양상을 상상하게 하는 말이기엔 문제적이다.

머니투데이 / 03.21 몸에 ‘박사’ 새기고 성노예로...신상 밝힌 회원들, 더 잔인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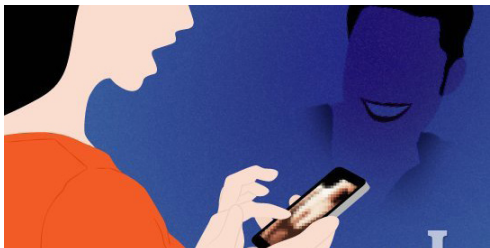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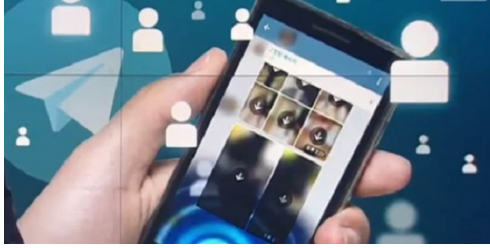
가해자의 범행 수법을 알리는 데 초점을 맞춘 기사의 내용과 달리 “몸에 ‘박사’ 새기고 성노예로”라고 제목을 선정하였다. 이는 조회수를 높이기 위해 피해자의 고통을 도구화하여 자극적으로 전시했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한국경제 / 03.24	'n번방' 피해 여성 "협박 후 나체사진 강요 …미성년 피해자 더 있을 것"
	피해자의 수많은 피해 사실 중 나체 사진을 보낸 사실을 특정하여 제목으로 서술하였다. 선정적인 어휘인 '나체 사진'을 통해 피해자의 고통을 도구화하며 디지털 성범죄를 자극적으로 소비했다.
인사이트 / 03.24	겉지도 못하는 6개월 아기 성착취 영상 유포자 고작 징역 1년 6개월 받았다
	피해자의 신상을 과도하게 부각하여 자극적인 제목을 의도하였다. 이는 피해자의 신상을 조회수를 높이려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제목이기에 문제적이다.
chosun.com / 03.25	[단독] 그놈이 여친이라 부른 여성도… 성착취 노예였다
	'성착취 노예'와 같은 선정적인 어휘로 피해자를 지칭하는 제목을 작성했으며, '그놈이 여친이라 부른 여성도…'라는 표현을 눈길을 끄는 소재로 활용하여 성폭력 사건을 보도했다. 이는 폭력을 폭력으로 바라보지 못하게 하며 디지털성범죄를 자극적인 소재로 소비하게 하기에 문제적이다.
위키트리 / 03.26	"아이돌 노예 있다" 조주빈이 고액방 유료 회원에게 보낸 영상들
	가해자가 한 말 중 "아이돌 노예 있다"라는 말을 강조하여 제목으로 사용했다. 이는 피해자에게 초점을 맞추어 피해 아이돌이 누구인지에 관한 궁금증을 일으키므로 2차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 또한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표현으로 디지털 성범죄를 다루었기에 문제적이다.

6
성폭력을 선정적으로 표현(영상, 이미지)

피해자 이미지를 사용하거나 성착취물의 내용을 암시하는 이미지를 사용한 사례들 또한 발견되었다. 이는 성착취 범죄의 심각성을 오해하게 하기에 문제적이었다. 대부분 이미지 자체가 필요 없는 경우이거나 보도 내용과 관련성도 낮았다.

인사이트 / 03.22	미성년자 '성착취'하는 n번방에서 잠입취재하던 기자가 가장 고통을 느낀 순간
	기사의 내용과 전혀 상관없이 옷을 벗고 있는 여성을 불법촬영하는 이미지를 자료 사진으로 사용했다. 특히 이 이미지의 경우는 여성이 스스로 옷을 벗는 장면을 찍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성착취 문제에 대한 오해를 불러 일으키는 이미지라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머니투데이 / 03.23	"성착취·지인능욕…'n번방'과 비슷한방 100개 더 있다"
	'몰카 SNS 불법유포'라는 이미지 설명과 함께 계단을 오르는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불법 촬영하는 이미지를 사용했다. 텔레그램 성착취의 성격을 일상의 비동의 촬영 문제로 잘못 오해하게 하는 효과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으며, 피해자 이미지를 사용하여 디지털 성범죄를 자극적으로 소비하기에 문제적이다.
머니투데이 / 03.28	'일본 야동' 여배우들, 'n번방' 피해자처럼 착취 당한다
 	기사는 여성의 가슴이 부각된 사진을 핸드폰 화면에 합성한 삽화를 사용했다. 성착취 영상물의 내용을 암시하는 이미지와 웃고 있는 남성의 모습을 가져와 성착취 범죄의 심각성을 오해하게 만들기에 문제적이었다. 더불어 남성이 여성을 위협하는 삽화를 사용해 성범죄 사건을 자극적으로 소비하게 하며, 수동적이고 무기력한 피해자의 이미지를 고착화 한다.
내외뉴스통신 / 03.31	n번방 모방 '로리대장태범' 범행 인정.. 중학생 성착취
	피해자들의 이미지를 사용하여 성범죄를 자극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알리며, 구조적인 문제 해결 방안을 적극적으로 드러내어 현 사회에서 필요한 논의들을 이끌어 낸 보도가 좋은 보도 사례로 뽑혔다. 피해자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보도윤리를 고민한 기사 또한 눈에 띄었다. 더불어 아래 사례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위의 성차별적 사례에서 언급했던 <디지털 성범죄를 사소화하게 할 수 있는 ‘물카’, ‘음란물’, ‘야동’ 등의 표현>을 사용할 때, 단순 인 용일지라도 괄호 안에 ‘불법촬영물’, ‘성착취물’이라는 단어로 표기해 해당 단어 사용으로 발생하는 문 제의식을 공유하는 기사 또한 존재했다.

한국기자협회 / 03.26 'n번방' 국민청원, 언론이 해야 할 3가지

기사는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및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드러난 여론, 디지털 성범죄의 대책을 세우기 위한 입법 움직임, 성착취 범죄가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으로 이어진 구조적 원인을 언급하며 이러한 대규모 성착취 범죄가 발생했을 때 언론이 해야 할 역할을 제시했다.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보도를 경계하고, '피해자의 시선으로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했고 가해자에 관한 자극적 보도가 '성범죄의 구조적 문제보다 괴물이 된 개인의 일탈로 치부해 사건의 본질을 왜곡할 우려가 크다'는 점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현행 법률의 미온적 처벌이 성착취물 시장을 키웠으며 무거운 양형 기준을 세울 필요성이 있다고 서술하였다.

시사저널 / 03.28 이 땅에 살기 위하여 [노혜경의 시사한 페미니즘]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을 일부 남성의 비정상적 '악당' 행위로 프레임하려는 언론과 여론을 비판하는 내용을 담으며,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을 바라보는 필자의 견해를 통해 “희생자들이 자신의 존엄성을 회복하고 당당하게 살아 있기를 선택하는 순간” 까지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에 대한 해결과 지속적인 관심을 촉구한다.

단디뉴스 / 03.30 [발행인 칼럼] 또 다른 N번방을 막아야 한다.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을 들어, “2020년 오늘 갑자기 나타난 것은 아니다. 장자연 사건, 김학의 사건, 버닝썬 사건, 양진호의 웹하드 카르텔, 웰컴 투 비디오의 손정우 사건, 여성을 비하하고 품평하며 여성의 사진과 동영상을 공유하던 기자, 대학생, 고등학생들의 수많은 단톡방들이 그 토대가 되어 나타난 것이 텔레그램 N 번방 사건”임을 지적하며 제대로된 처벌, 성착취물 수요에 대한 문제제기, 법제정 등을 해결책으로 제시하였다.

시빅뉴스 / 03.30 'n번방' 관련자 26만 명은 발뺌하지 마라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의 본질은 성범죄를 정당화하는 남성중심적 성문화에서 기인하였음을 말하며, 자신을 'N 번방 가입자'들과 분리하려는 남성들에게 침묵을 반성하고 연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비마이너 / 04.02 텔레그램 성착취방 '신상공개 요구'가 향하는 곳

기사는 “지금 신상공개 요구 앞에는 숨겨진 말이 있다. 디지털 성범죄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을 거라면, 가해자가 또 다른 디지털 성범죄에 가담할 수 있는 조건을 방치할 거라면, 피해자의 목소리를 듣지 않을 거라면, 신상공개'라도' 하라는 요구이다”라고 서술하며 N번방 가해자 전원의 신상공개가 수백만의 동의를 얻은 이유로 신상공개가 공적 처벌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짚는다. 더 나아가, 기사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할 수 있는 법체계를 정비하고, 가해자에 대해 응당한 법적 책임을 물으며, 피해자의 대응과 회복을 지원하는 공적인 시스템이 마련되고 제대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서술하여여 국가가 신상공개를 할 것인지 여부가 아니라 디지털 성범죄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 고민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해자 신상공개'에 집중하는 사회적 관심에 국가가 대응해야 할 올바른 방향에 대해 제시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한겨레 / 04.03 [폰터뷰] n번방 피해자도 잘한 거 없다?… 피해자 두 번 죽이는 말

기사는 인터뷰를 통해 “가해자가 만든 범죄 구조에 피해자가 유인당한 건데, 유인을 당했기 때문에 잘못이라고 말하는 건 문제”라며 피해자가 아닌 가해 구조를 만든 사람에게 집중해 2차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한다. 또한 “언론이 성범죄를 다룰 때 ‘씻을 수 없는 상처’, ‘악마’같은 표현을 쓰는데, ‘씻을 수 없는 상처’는 성범죄를 ‘범죄’가 아닌 ‘성관계’로 보는 관점이고, 피해자는 범죄 피해를 당한 것이지 성적으로 훼손된 게 아니기 때문에 써서는 안 되는 표현”이며 “또 ‘악마’라는 표현은 평범한 사람인 (가해자를) 타자화, 비 일상화시키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아야”한다고 말하며 언론이 지켜야 할 보도 지침을 짚어냈다. 전문가와의 인터뷰를 통해 피해자의 입장을 잘 대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일다 / 04.05 성범죄의 '증언'은 왜 진실을 의심받는가?

기사는 성범죄의 증언이 진실여부를 의심받는 사회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책 소개를 통해 피해자들을 단순히 성착취 피해자로만 보지 말고 자신이 당한 폭력을 증언한 적극적 증언자로서 바라보고자 해야 한다고 한다. 피해자를 나약하고 무기력한 존재로 낙인찍지 않고, 피해자의 증언의 진실여부를 의심받는 상황에 대해 잘 지적하였다.

03 나가며

9
디지털 성범죄는 ‘협업적
성착취’, 시사인, [https://
www.sisain.co.kr/news/
articleView.html?idxno
=41685](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685)

10
성폭력·성희롱 사건 보도
공간기준 및 실천요강(2018,
한국기자협회·여성가족부)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의 경우 피의자 신상 공개와 함께 여론의 집중적인 관심을 받은 사례이다. ‘야동’, ‘몰카’ 등의 용어로 범죄의 심각성이 경시되어 비가시화되었던 디지털 성범죄가 공론화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나, 디지털 성범죄 보도윤리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기사는 오히려 잘못된 성폭력 통념을 강화시키고,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서울YWCA는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언론 보도 모니터링을 통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의 책임을 약화하지 않으면서도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다루는 보도는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답하고자 했다.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고려할 때 가장 최우선이 되어야 할 점은 피해자 보호다. 성범죄 보도 시 피해자의 신상에 관한 몇 가지 간접적인 정보 제공만으로도 피해자의 신원을 노출 시킬 수 있기에 문제적이다. 더불어 피해자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는 표현 또한 지양되어야 한다. 이번 모니터링에서 피해자를 무조건 수동적인 존재로 그리며, 성범죄 피해는 치유되거나 극복되기 힘들 것이라는 잘못된 성폭력 통념을 재생산하는 사례가 8건 발견되었다. “고통 속에 사는 피해자들”,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고통”, “씻을 수 없는 대못질”, “살을 송두리째 앗아가는”과 같은 표현은 성범죄 피해를 회복 불가능한 수치스러운 일로 묘사하기에 문제적이다.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들의 고통을 극적으로 전시하는 것이, 피해자들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조장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언론보도에서 가장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가해자의 생애, 발언 등에 주목해 가해자를 비정상적인 존재로 타자화하여 성범죄 사건을 일상에서 분리된 예외적 사건으로 인식하게 하는 14건의 사례이다. 해당 기사들은 ‘악마’, ‘소시오패스’, ‘부적응자’, ‘짐승’ 등의 표현을 사용해 가해자를 비일상적인 존재로 표현하였다.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은 생산자, 유통자, 참여자, 소비자가 모두 함께 참여하여 만들어진 디지털 성착취 범죄로, 개인의 일탈에서 비롯된 특수적인 성범죄가 아니다.⁹ 성범죄 사건 보도 시 가해자를 비일상적인 존재로 표현하는 것은, 대부분의 성폭력 사건이 피해자와 가해자가 서로 아는 관계에서, 가해자의 사회경제적 지위 혹은 권력을 이용하여 발생한다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일상적으로 빈번하게 일어나는 평범한 가해자들에 의한 성폭력 사건을 ‘성폭력’으로 인식하지 못하게 한다¹⁰는 점과과, 또한 유명인이 되고자 하는 가해자의 욕망을 충족시켜줄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여성단체들이 꾸준히 ‘몰카’, ‘음란물’과 같은 용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해왔음에도, 여전히 디지털 성범죄를 ‘야동’, ‘음란물’로 표현하는 기사가 114건이나 발견되었다. 몰카라는 단어가 11건 사용되었고, 성착취물이 아닌 ‘음란물’이라는 용어는 97건이나 사용되었다(법률 인용 및 법제도에 포함된 ‘음란물’ 용어는 모니터링 시 제외). 서울YWCA는 2019년 시사토론 프로그램 및 인터넷 기사 모니터링을 통해 성폭력 사건을 선정적인 가십거리로 다루는 보도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여전히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보도에서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문제의식 없이 많은 클릭을 유도하기 위해 제목이나 이미지, 영상 등을 통해 사건을 자극적인 소재로 소비한 사례들이 10건 발견되었다. 이는 폭력을 폭력으로 바라보지 못하게 하며 피해자를 성적 대상화된 존재로 바라보게 하기에 문제적이다.

그럼에도 긍정적인 것은 이번 모니터링 보고서에서 지적한 성차별 보도의 문제점들에 공감하며, 피해자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보도윤리를 고민하는 기사들이 9건 발견되었다는 점이다. 이 기사들은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알리며, 구조적인 문제 해결 방안을 적극적으로 드러내어 현 사회에서 필요한 논의들을 이끌어내었다. 또한 성평등적인 사례로 표시하지는 않았지만, 단순 인용일지라도 누군가 ‘몰카’, ‘야동’, ‘음란물’이라고 디지털 성범죄를 언급한 발언을 기사에 실을 때 기자들이 괄호 안에 ‘불법촬영물’, ‘성착취물’이라는 단어로 정정하는 사례들이 발견되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이는 성범죄 보도윤리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성평등한 보도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번 모니터링이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의 책임을 약화하지 않으면서도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다루는 보도는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을 같이 찾아나가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이슈모니터링 체크리스트

기사경력: ① 해설기사(스트레이트) ② 노설기사(시설, 노평, 컬럼 등)

[illegible]

2020 대중매체 양성평등 모니터링 보고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서울 YWCA

발행일 : 2020년 6월 발행처 : 서울YWCA 발행인 : 이유림 작성 : 강유민 김혜리 (서울YWCA 여성운동국) 자료 : 김수이(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여성학협동과정 부교수) 출판기관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